
2011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2010. 12.

한국장학재단

- 차 례 -

I.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지원방향	1
3. 지원계획	1
II. 사업내용.....	1
1. 지원대상(신청자격).....	1
2. 용자대상금액	3
3. 용자조건.....	3
4. 용자학기수.....	3
5. 학자금용자 신청 및 용자제한.....	4
6. 용자금 상환.....	5
7. 장기미상환자 제재.....	5
III. 학자금용자	6
1. 신청 및 용자 일정.....	6
2. 신청방법.....	7
3. 용자 대상자 선정기준.....	10
4. 선정방법	10
5. 학자금 용자 지급	11
6. 재학생학자금 용자 관리 책무.....	11
IV. 학자금 용자 상환 관리 등.....	12
1. 반환 및 상환방법	12
2. 용자금 상환유예	13
3. 용자금상환 연체자관리.....	16
4. 신용유의정보의 등록 및 해제관리.....	16

주요변경사항 요약 및 신규대비표

구 분	이 전(2010년)	이 후(2011년)	변경사유
미성년자(만20세미만) 제출서류 간소화	학부모(보호자) 친권자 동의서, 본인(학생)명의 기본증명서 제출	<u>제출생략</u>	재단법 제49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개정(2011.1.1) *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법 정 대 리 인 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
거치기간 연장 (‘11년도 이후 상환도래자)	졸업 또는 수료후 <u>1년</u> <u>거치후</u> 상환도래	졸업 또는 수료후 <u>2년 거치후</u> 상환도래 (단, 2011년도 이후 상환도래자부터 적용)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대학 졸업생 들의 상환부담 경감
신입생 조기자원	신입생은 등록금 기등록 하여 3월말에 융자실행	신입생 정시등록기간인 2월초에 융자실행	신입생 등록금 납부일정에 맞 추어 융자지원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 공인인증서 도입 (‘10.2학기~)	학부모(보호자)의 연대 채무약정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3종 추가 서류 제출	학부모(보호자) 연대 채무자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3종 추가 서류 생략	학생의 서류제출 간소화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 「2003 대학 등록금자율화 조치」 이후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용 학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자재원 지속적 확충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자녀와 다자녀 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은 우선 지원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학자금은 학기별로 등록금 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용자 지원
- 연체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추진

3.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1. 1학기	‘11. 2학기
지원인원	27,000(100%)	14,000(52%)	13,000(48%)
지원금액	94,500(100%)	49,100(52%)	45,400(48%)

* 1학기는 입학금 수요를 감안하여 2학기보다 증액 배정하며, 1차분(신입생) 및 2차분(재학생 위주)으로 나누어 지원

** 실제 지원실적은 상환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II. 사업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⑤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대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학교별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
 - * 대학의 특별추천제 과·오용을 방지하고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대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교)로 하여금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사후확인에 대비토록 함

특별추천 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특별추천 선정

- 대학(교)로부터 특별추천 받은 학생에 대한 최종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담당 및 재단 업무 관련 부서장(팀장) 및 담당 등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서류 심사 등을 실시 후 수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용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용자금액으로 함
 - ※ 단, 이 경우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용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 학기 대출제한

3. 용자조건 : 무이자

4. 용자학기 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용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용자학기 수로 인정
 -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 용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용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용자학기 수에 포함

5. 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자(단, 등록후 해제된 경우는 제외)

○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이중수혜자 융자제한

- 아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국가무상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대학생(학부) 장학금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차액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음)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6. 융자금 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2년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 ~ 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 ~ 8월인 대상자

- 상환방법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다만,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 및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의하여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한다.

7. 장기미상환자 제재

- 연체 10개월이상의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

Ⅲ. 학자금융자

1. 세부일정

세부내용	일 정		비고															
	1차	2차																
○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www.kosaf.go.kr)																		
<table><tr><th>기본자격</th><th>이수학점 및 성적</th></tr><tr><td><table><tr><th>원칙</th></tr><tr><td>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td></tr><tr><th>추가</th></tr><tr><td>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td></tr></table></td><td><table><tr><th>이수학점</th></tr><tr><td>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 졸업학기,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td></tr><tr><th>성적</th></tr><tr><td>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환산) -예외: 신입생</td></tr><tr><th>예외</th></tr><tr><td>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td></tr></table></td></tr></table>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table><tr><th>원칙</th></tr><tr><td>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td></tr><tr><th>추가</th></tr><tr><td>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td></tr></table>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table><tr><th>이수학점</th></tr><tr><td>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 졸업학기,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td></tr><tr><th>성적</th></tr><tr><td>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환산) -예외: 신입생</td></tr><tr><th>예외</th></tr><tr><td>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td></tr></table>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 졸업학기,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환산) -예외: 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table><tr><th>신입생에 한함 (1학년)</th><th>재학생 위주</th></tr></table>	신입생에 한함 (1학년)	재학생 위주	학생 (2주)
기본자격	이수학점 및 성적																	
<table><tr><th>원칙</th></tr><tr><td>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td></tr><tr><th>추가</th></tr><tr><td>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td></tr></table>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table><tr><th>이수학점</th></tr><tr><td>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 졸업학기,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td></tr><tr><th>성적</th></tr><tr><td>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환산) -예외: 신입생</td></tr><tr><th>예외</th></tr><tr><td>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td></tr></table>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 졸업학기,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환산) -예외: 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원칙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대학생 본인(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추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적용불가) -예외: 졸업학기,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환산) -예외: 신입생																		
예외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신입생에 한함 (1학년)	재학생 위주																	
	'11. 1. 3(월) ~ '11. 1.14(금)	'11. 1.24(월) ~ '11. 2.4(금)																
○ 융자대상자 확인 및 특별추천 - 증빙서류 확인,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액 등록 · 원본서류 : 재단이 정한 기일에 일괄 송부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대출제한	'11. 1.17(월) ~ '11. 1.21(금)	'11. 2.7(월) ~ '11. 2.11(금)	대학 (1주)															
○ 융자대상자 심사 - 융자대상 적격 유무 확인 - 거주기간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 농·어업 종사여부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필수</td><td>-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td></tr><tr><td>1순위</td><td>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td></tr><tr><td>2순위</td><td>-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td></tr></table>	구분	내용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11. 1.24(월) ~ '11. 2.4(금)	'11. 2.14(화) ~ '11. 2.25(금)	재단 (2주)							
구분	내용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대상금액 이체 ※ 신입생의 경우, 학생의 최종등록 대학(교) 확정시 최초등록한 대학은 학생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 정식 등록기간내 최종등록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다만, 학생이 최종등록 대학(교)에 미등록 또는 등록금 차액분 미상환시에는 추후 전체학기 융자제한 조치 ※ 대학은 3월말경 학생의 최종등록 정보를 재단에 통보	'11. 2. 7(월) ~ '11. 2. 9(수)	'11. 2.28(월) ~ '11. 3.2(금)	재단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 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전 준비사항

학 생

【공동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① 용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① 용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 온라인 신청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용자신청 및 용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
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
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학부모(보호자)의 정의는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함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 (1) 조부모
 - (2) 형제자매
 - (3) 만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
 3.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용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대학(교) 신청기간 내 : 학자금대출 담당부서
 - 대학(교) 신청기간 마감후 : 수정 불가

대학(교)

- 온라인 신청서 확인(심사) 및 신청서 제출
- 특별추천자 추천하여 신청자에게 배부
- 신청학생의 신청서 및 신청증빙자료 원부 접수·확인
 - 신청서에 성적(학점 및 100점 만점 환산 성적) 확인 및 수정
 - ※ 소수점이하 반올림하여 정수(0~100점)로 입력
 - 학부모(보호자) 공인인증서 미 신청시 연대채무약정서의 학부모(보호자)의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인감도장 불일치시에는 탈락되므로 유의
- 온라인 입력 및 확인(1차 심사 : 대학(교))
 - 학교정보 갱신, 신청자 학점, 성적 확인 및 개별 또는 일괄 등록
 - 신청내용 확인(대학 심사 실시) 및 수정
- 공문제출 : 신청서 및 신청자추천조서 제출(학교→재단)
 -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및 학생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시 첨부한 관련 증빙서류 사본은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하되, 원본 일체서류는 재단으로 반드시 등기로 송부

※ 서류제출 마감기한

- 1차(신입생) : '11. 1. 21(금)限
- 2차(재학생위주) : '11. 2. 11(금)限

(주의사항)

서류제출은 위의 서류제출기한내 재단 도착분에 한하며, 농촌학자금 융자 전체일정상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해당대학 학생에 대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입생의 경우, 학생의 최종등록 대학(교) 확정시 최초등록한 대학은 학생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 정시등록기간내 최종등록 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다만, 학생이 최종등록 대학(교)에 미등록 또는 등록금 차액분 미상환시에는 추후 전체학기 융자제한 조치
- 대학은 3월말경 학생의 최종등록 정보를 재단에 통보

3. 용자 대상자 선정기준

- 매학기 용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로 우선적용

【순위별 적용대상자】

순 위	적 용 대 상 자
필 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4. 선정방법

- 심사절차

단계	심사내용	심사방법	심사주체
1 단계	○ 추천 대상자 선정	○ 신청서 입력사항과 제출서류 확인 ○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 일괄 등록 ○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나 학적변동 상황 확인 등	대 학
2 단계	○ 지원대상자 서류 확인	○ 신청서 입력사항(학생, 대학) 및 성적 확인 ○ 대학 송부서류 확인	재 단
3 단계	○ 지원대상 사실 여부 확인	○ 학부모 여부 및 주소지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조회나 신청자 제출서류로 확인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 -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원부자료는 농림수산 식품부에 의뢰	재 단

※ 전 용자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자격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선정 기준에 의거 용자대상자로 선정

○ 자격심사 확인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농지(어선)소유, 임차 및 경작 상황 등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미 경작 등은 선정에서 제외)

5. 학자금 융자 지급

○ 재단에서 신청학생 소속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소속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함(재단→학교→등록금대체) 단, 선등록한 학생의 경우 개인 지급 가능

※ 융자송금이 지연될 경우 신청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납입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 후 즉시

- 1차(신입생) : '11. 2. 7(월), 2차(재학생 위주) : '11. 2. 28(월)

※ 상기 지원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6. 재학생 학자금 융자 관리 책무

○ 소속대학(교)

- 학자금 융자는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함
 - 등록금 대체 후 수혜(학생)자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하여야함
- 학자금 융자는 가능한 등록금과 대체토록 하고 1개월 내에 지급영수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함
- 학자금 융자 수혜자의 학적변동시 재단으로 즉시 보고
- 학자금 융자의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당해학기에 발생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하여야 함.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 대상에서 제외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등에 대하여 재단에 즉시 상환 및 반환 처리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기타 학자금의 용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재학생 반환 송금계좌】

구 분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농촌학자금용자반환	국민은행(양재남지점)	재)한국장학재단	787-25-0021-609

※ 용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용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조치

○ **용자 수혜자(학생) 책무**

- 학자금 용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용자금을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용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용자에서 차감하여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반환하거나 소속대학이 직접 재단에 상환토록 동의함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연도 2월인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연도 3월~8월인자
- 용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용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함
- 기타 학자금의 용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용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함
- 신입생의 경우 최후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 까지 대출 제한

IV. 학자금 용자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1. 반환 및 상환방법

○ **재학생 반환**

- 용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 소속 대학(교) 장학담당부서는 재학중인 용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 업무절차 : 학생 → 학교 → 재단

- 반환시에는 재단 반환금 관리 통장에 입금 처리 및 재단의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반환사유, 반환금 등을 입력(서류 등 일체 미제출)

○ 졸업자 상환

- 졸업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상환계획서 제출시 상환방법 선택(졸업 3개월전에 제출 안내함)
 - * 2월 졸업자 : 전년도 10월, 8월 졸업자 : 당해연도 5월
- 상환기간 및 방법
 -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원칙)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 및 기타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의하여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한다.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대여(융자)를 동일 학교에서 모두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 상환도중 일시 상환한 경우에는 납기일 기준으로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상환납부 : 지로 또는 재단 지정 은행(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지로 자동이체가능)
 - 지로번호 : 7620755(예금주 : 한국장학재단)
 - 가상계좌 개설은행 :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 상환연장(상환연장신청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상환안내에 학자금상환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단으로 팩스 (02-2259-2338)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상환기간 연장 :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2. 융자금 상환유예

- 상환기간연장 : 거치기간을 제외한 상환기간의 연장은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항 및 제18조(현역의 복무) 2항에 의거 징집 소집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단,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의무기간으로 적용한다.(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 현역 의무기간만 적용되며, 군휴학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하다.

나. 상급학교 진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 상급학교의 진학범위는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수료시점)동안 연장할 수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학점은행, 복수전공 및 통신교육을 통하여 학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환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상급학교 진학이란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로 진학한 경우와 학사 취득 후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한 경우를 말한다.

다. 재입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적부)

- 재입학의 범위는 기존수혜 학생이 현 재학(휴학, 미등록제적 등) 상태에서 1학년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한 경우를 말하며,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학교로 재입학(신입학 포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상환연장기간은 연체가 아닐 경우 재학기간 동안에만 연장할 수 있다.

라. 유학(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영문))

- 외국에 유학하는 범위는 국외수학기관 중에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수료시점)동안 연장한다. 단, 어학연수의 경우 학위 즉,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학교가 시행하는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연장을 인정 하되, 단순 어학연수는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

※ 상급학교에 유학하였을 경우만 연장가능

마. 휴학한 경우(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휴학증명서)

- 학적변동신고를 통한 휴학기간(최대 2년)도 연장할 수 있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상기 기간에 미포함

하며, 부득이하게 상기 휴학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바. 사고 및 질병에 따른 연장(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진단서)

- 병원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중 일정유예기간(6개월)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연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 지체부자유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 장애신체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1년) 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장애인 복지법률에 의거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부자유자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1~5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아. 불치병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진단서)

- 심장병, 백혈병 등 초기일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을 주며, 중증인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자. 재난, 재해(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해확인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극심한 피해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재난극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징역 또는 수감자(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등)

- 상환대상자가 징역 또는 수감 중인 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복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한다.

카. 형법(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사본 등)

- 형사 처벌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로 복역 중인 경우에는 형의 복역기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단,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 유기 : 3개월 이상 형을 받은 경우(단, 형의 증가시에는 25년까지)
※ 구류, 벌금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구속 등은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 면제(관련서류 : 상환면제신청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사망자 : 상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행정안전부 거주 여부 확인 자료를 근거로 면제 처리 할 수 있다.
- 장애자 : 장애 1급으로써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면제 처리 할 수 있다. 단, 학자금융자 수혜 받을 당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 이상 연체자 본인에게 SMS를 통한 상환촉구 후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상환독촉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등 7단계로 관리

구 분	연체기간	제 재	대 상	관련서식	비 고
1단계	2개월~3개월	미납통보	본인		유선, SMS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 미납통보
2단계	4개월~5개월	촉구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촉구장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3단계	6개월~8개월	상환이행촉구 독촉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독촉장 상환이행촉구서	상환독촉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4단계	9개월이상	최고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채무불이행거래자 정보 등록 예정통지서)	상환 최종통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5단계	10개월	채무불이행 등록통보	본인		최고장 발송자로서 1개월 이후까지 미납한 자
6단계	10개월 이후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본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7단계	10개월 이후 ~ 상환만기	최고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 (미납금 안내)	10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8단계	상환만기 도과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본인 및 연대채무자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독촉절차 포함)

※ 상기 상환 및 독촉에 따라 본인, 학부모(보호자) 및 연대채무자에게 안내 실시

4. 신용유의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어업인의 기준

-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촌지역의 기준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08.12.15)호에서 정한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문 의 처

(100-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 사업관련 문의
 - 재단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Tel (02) 1666-5114
 - Fax (02) 2259-2338